



중견기업 사업재편 전략설계 지원사업

기업활력법을 활용해보세요
신산업진출기업, 산업위기지역기업, 과잉공급 업종 기업의
사업재편을 도와드립니다!

FOMEK 한국중견기업연합회

사업목적

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기업활력법)」에 따라
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지원

정상기업의 선제적 체질개선 및 혁신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부실 발생 후
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

지원대상 및 지원요건

지원대상 신산업진출 기업, 과잉공급업종 기업, 산업위기지역 기업

신산업 진출	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활용 분야 또는 규제샌드박스 승인 분야 진출
과잉공급 업종	과잉공급 분야 사업 ①비중 축소 또는 ②신시장 개척(수요 확대) *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15% 이상 감소한 기업
산업위기 지역	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」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속한 기업 * (조선) 군산, 거제, 울산 동구, 창원 진해구, 통영·고성, 영암·목포·해남, (자동차) 군산

지원요건



- ① 구조변경 : 자산(설비, 지식재산 등)·영업·주식 양수도, 합병, 분할, 회사설립 등
사업혁신 : 신제품 개발, 또는 제품 생산·판매나 원재료 사용·제공 방식의 효율화
② 생산성, 매출액 등 향상

추진절차



사업재편 승인기업 인센티브 세제, 자금, 고용안정, R&D, 사업화 등 맞춤형 지원

절차 간소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소규모분할) 자산규모 10% 이하 사업 부문 분할 시 절차 완화 * 이사회 결의로 갈음(주주총회 생략) (주총 소집기간 단축) 7영업일(상법 : 2주) (채권자 보호절차 단축) 10일(상법 : 1개월) (주주 :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) 10일(상법 : 20일) (회사 : 주식매수 의무기간 연장) 상장회사 3개월(상법 : 1개월), 비상장회사 6개월(상법 : 2개월)
규제 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주회사·자회사·손자회사 지분규제 등 유예기간 연장 : 3년(공정거래법 : 1~2년) 상호·순환출자 규제 유예기간 연장 : 1년(공정거래법 : 6개월)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 간 채무보증금지 규제 유예기간 연장 : 3년(공정거래법 : 2년)
세 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법인세) 금융채무 상환 시 자산매각 양도차익 과세이면,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 양도차익 과세이면, 이월결손금 공제율 확대(60%→100%) (등록면허세) 합병·증자 등 자본금 증가 시 등록면허세 50% 감면
입지 특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→ 승인기업은 시장가격으로 매각 허용 * 양도차익의 70% 이상을 사업재편 용도로 재투자 시
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정책자금)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* '20년 3/4분기 적용 금리 2.15%+α, 지원 규모 확대(960→1,600억원) (우대지원) 산업은행·기업은행, 기술보증·신용보증 등 용자·보증 시 금리·요율 등 우대 * (산업은행) △0.2~△0.7%p, (기업은행) △1%p, (기술보증) △0.2%p, (신용보증) 보증비율 90% 적용 및 보증료율 0.2%p 차감 등 · “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” 지원 대상 추천 * 대출·보증 우대, 경영 컨설팅 및 판로개척 지원, 민간자금 유치 혜택 ·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요건 완화 (기존 사업장 축소불가 → 축소가능)
고용안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요건 완화 및 직업능력훈련비 지원 비율 확대 · 실직자 재취업 패키지 지원요건 완화
정부사업 우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스마트공장 구축사업, 글로벌 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참여 우대 · 정부 R&D사업 우대 가점, 중소·중견기업 과제수행 한도(중소3, 중견5) 및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 적용, 기술료 납부유예 등
신산업진출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산업진출 사업재편 승인기업 R&D 지원(전용 R&D사업, '21년~) · 수요 맞춤형 신산업 진출 사업화 지원('21년~) * 기업별 최대 5천만원, 중소·중견기업별 매칭비율 차등

신청방법

신청기간 · 상시 접수

신청방법 ·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통해 **사전상담*** 진행 후 신청·접수

* 사업재편 기본요건 충족 여부, 신사업 해당 여부, 제도 활용계획 등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지원

신청문의 ·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사업팀 (☎ 02-3275-2217)

FOMEK 한국증견기업연합회



산업통상자원부



대한상공회의소

